제997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(개인정보보호위원회)	1.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(신설) o 해외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설립한 국내 법인 외에, 임원 구성 및 사업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범위를 구체화(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3제3항 신설) – 법인의 대표이사 임면 또는 임원의 50/10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, 또는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/10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규정 ▶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, ▶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3 2.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감독 의무(신설) o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(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4항 신설) –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 실시 – 국내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계획의 수립 여부, 계획 이행 여부,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여부 점검 ▶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, ▶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3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2	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흡연실 설치기준·방법 적용(신설) o 대안교육기관에 흡연실 설치 시, 기존 아동 ·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의 흡연실 설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실외(옥상 또는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)에 설치하도록 규정 ▶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	1.비중요
3	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의 카드뮴 기준(신설) o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의 카드뮴 기준 신설 (코코아분말: 2.0 mg/kg 이하, 초콜릿류: 0.3 mg/kg 이하 (다만, 초콜릿: 0.8 mg/kg 이하)) ▶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. 3-1 5) (2),제5. 3-2 5) (5) 2.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(신설) o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 및 기준 · 규격 신설 ▶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. 11-1 3) (6),제5. 11-1 4) (8) 3.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(강화) o 동물용의약품(페나세틴)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폐지하고,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로 관리 ▶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. 3. 8) (1) 4.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(강화) o 노발루론 등 27종 농약의 설정된 잔류허용기준 강화 ▶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별표4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4	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(환경부)	1.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·신고, 변경허가·신고 및 면제(강화) o 영업허가와 영업신고의 대상 구분 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절차와 의무를 차등화 o 영업허가와 영업신고의 면제(대상 외)가 가능한 영업을 사용업에서 제조업, 판매업, 보관·저장업으로 확대 ▶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, 제29조, 제31조의2제31조의3 2.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·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등(강화) o 취급시설 검사주기 차등화(현행: 1~2년→ 개정 : 1~4년) ※ 대부분의 사업장은 검사주기가 완화 또는 현상유지되나, 예외적으로 주기가 강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o 설치검사 및 정기·수시검사(이하 “정기검사 등”), 안전진단의 완료 보고자를 당초 사업장에서 검사기관으로 변경함* - 안전진단 및 정시검사 등 완료 보고자 변경 취지는 규제 강화가 아니지만, 절차 신설로 규제로 보는 견해도 있음 * [변경 취지] 검사 완료시 그 검사결과 제출과 관련, 현행 “검사기관(검사 완료) 통보→사업장 제출→지방환경관서의 장(환경부)” 절차에서 “검사기관(검사 완료) 통보→사업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o 안전진단 주기는 당초 취급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4년 · 8년 · 12년으로 구분하였으나, 취급시설 검사주기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이 구분함(4년 · 8년 · 12년)* * 대부분의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주기가 완화되는 측면이 강하지만, 강화되는 시설이 일부 있을 수 있음 ▶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,제24조	
		3.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(강화) o 영업허가자인 경우 사업장 종사자 수 등의 기준으로 기존 1명 이상 선임해야 했으나 영업신고는 1명 선임으로 합리화. – 시약판매업의 경우 관리자 선임이 면제되었으나,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영업신고와 같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1명 선임 의무 부여 ▶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	3.비중요
		4.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시간(강화) o 기존 영업허가자와 동일하게 영업신고에 따른 영업자가 고용한 관리자와 취급담당자 2년마다 16시간의 교육 의무 부여 – 시약판매업의 경우 관리자 1명 선임 의무 부여(개정안 제33조, 별표6의2)에 따른 시약판매업의 관리자와 시약판매업의 취급담당자에게 2년마다 8시간의 교육 의무 부여 ▶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	4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5.허가물질의 제조 · 수입 · 사용 허가 등(강화) o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 · 수입 신고를 시행규칙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함 ▶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6.금지물질 · 제한물질의 제조 · 수입 · 판매 등 허가 및 신고(강화) o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 · 수입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함 o 제한물질을 용도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제조 · 수입 · 판매 · 보관 · 저장 또는 사용 신고를 받도록 함 ▶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7.국내대리인의 자격요건 등(신설) o 국내대리인의 요건을 대한민국 국적과 주소를 지닌 자로 함 o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의 신고 시 제출 서식과 첨부서류를 규정 ▶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3	5.비중요 6.비중요 7.비중요
5	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(원자력안전위원회)	1.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 기록·비치하여야 할 사항(신설) o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, 발전용원자로 등을 준용하여 핵연료주기시설 건설자가 기록 · 비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 ▶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5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시설의 검사기록 보관(신설) ㅇ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, 발전용원자로 등을 준용하여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자가 정기검사 및 품질보증검사 결과를 기록·보관하도록 규정 ▶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5조	2.비중요
6	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취약한 해양생태계 확인 보고 기준(신설) ㅇ 취약한 해양생태계 확인 보고 기준을 어업별로 구체화함(별표1 신설) ▶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제6조	1.비중요
7	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불건전한 영업행위의 금지 추가(신설) ㅇ 장외거래중개업자의 법령상 업무기준 미준수, 투자자들의 과잉매매 유도를 위한 신용공여 및 공매도 허용, 특정 종목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제공, 거래대상 지정시 정당한 사유없는 차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율 ▶금융투자업규정 제4-20 2.장외거래중개업자의 준수사항 및 인력요건(신설) ㅇ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(장외거래중개업자) 인가단위를 신설하며 인력요건으로 매매체결전문인력 1명, 전산전문인력 8명을 갖추도록 하고, 거래대상 종목을 전문종목과 일반종목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규정 ▶금융투자업규정 제5-2의3,제2-6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8	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1.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(신설) o 대형가속기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①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대형가속기와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절할 것 ②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 시설을 갖출 것 ③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④ 교육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o 과기정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출연한 경비를 지원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▶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,제8조	1.비중요
9	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영 규정 제정안 (산림청)	1.임업경영정보 세부 등록기준(신설) o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·제3항 및 제22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임업인과 농업법인의 임업경영정보 등록을 위한 세부 등록기준을 정함 ▶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영 규정 제6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임업경영정보 등록 시 제출서류(신설)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· 제3항 및 제22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임업경영정보 등록신청 시 등록기준 세부 내용 충족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함 ▶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영 규정 제7조	2.비중요
10	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농림축산식품부)	1.특성화농업지구 세부 지정기준(신설) ㅇ 지정범위 – 특성화농업지구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녹지지역, 관리지역,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ㅇ 지정기준 – 특정 농산물을 연접 또는 인접한 농지에서 집약적으로 규모화하여 생산하는 지역일 것, 농산물 종류별 또는 재배 방법별 농지 면적 및 각종 인증 면적 등이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, 유통 · 가공시설을 농지와 집적화할 경우 주변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일 것 ▶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	1.비중요